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질의회신 사례집

2018. 1.

◆ 재건축사업에서 부대복리시설 소유자 2주택 공급 관련

(2017.08.07.)

질의요지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이하 “도시정비법”)」 제52조제2항제2호가목에 적합한 부대·복리시설의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7호다목을 적용하여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지

회신내용

- 도시정비법 제5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부대·복리시설의 소유자에게는 부대·복리시설을 공급하며, 같은 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-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대·복리시설의 소유자의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48조제2항제7호다목에 따른 2주택 공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 드리오니,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